

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

(배지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837
----------	------

발의 연월일 : 2020. 10. 26.

발 의 의 원 : 배지숙 의원

김재우 의원 김규학 의원

김성태 의원 윤영애 의원

이만규 의원 이태손 의원

전경원 의원 정천락 의원

1. 제안이유

- 가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의2에 의거하여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
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운동 환경 조성
- 나.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 팀 인권침해 및 성희롱 사실이 지역사회로 하여
금 체육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조례로 마련하여 재발 방지
- 다. 지역체육인의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「체육인복지법」 개정의 필요성
을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(2019년 7월 18일)제안하여 반영된 사항

2. 주요내용

- 가. 체육 인권 조례의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 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체육 인권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(안 제4조~제5조)
- 다. 인권보장 증진위원회 심의 (안 제6조)
- 라. 체육 인권 신고 및 상담사업 위탁과 비밀누설 금지 (안 제7조~제8조)
- 마. 체육 인권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 (안 제9조~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의2(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)에 따른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대구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있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운동 환경 조성에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인권”이란 「대한민국헌법」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
2. “체육 관련단체”란 시를 대표하는 대구광역시체육회 및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.
3. “체육인”이란 시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이거나 체육 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, 선수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은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체육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체육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체육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체육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의 체육 인권보장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체육 인권보장의 기본이념
2. 체육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
3. 대상자별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
4. 체육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
5. 체육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
6. 그 밖에 체육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

- ② 시장은 제1항에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체육 인권 교육) ① 시장은 시의 체육 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체육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 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- 1. 체육 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·지원 사업
- 2. 체육 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
- 3.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신고 방법 및 절차 교육
- 4. 그 밖에 체육 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) ① 시장은 체육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「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.

- 1.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3. 체육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) ① 시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의5 따라 폭행·협박·성폭력·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- 1. 체육단체와 그 지부
- 2.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
- 3.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비밀누설 금지) 위원회의 위원,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체육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체육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의견 또는 진술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민체육진흥법

문화체육관광부(체육정책과) 044-203-3119

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<신설 2020. 2. 4.>

제18조의2(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8조의3(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)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.

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

2. 피해자에 대한 상담, 법률 지원 및 연계

3.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

4.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

5.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④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⑤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⑥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.

⑦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8조의4(고발 및 징계요구)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,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,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18조의5(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,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8조의6(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, 대상,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의7(장려금의 환수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1조의5제4호(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)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환수 및 지급중지의 범위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제18조의8(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17400호, 2020. 6. 9.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

(제정) 2014-05-20 조례 제 4580호

(일부개정) 2016-12-30 조례 제 492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인권”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
2. “시민”이란 대구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,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4조(시민의 협력)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2.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
3.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

4.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,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인권교육)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.

제6조의2(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)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「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16.12.30.]

제7조(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)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인권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의2(인권센터의 설치)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권센터(이하 “인권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

2.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
3.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
4.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

③ 인권센터는 해마다 전년도에 대한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6.12.30.]

제8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·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
2.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
3. 학계,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에서 인권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·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)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개정 2016.12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